

● 통일국민당

현장확인위주의
의정활동이
펴졌다

❶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총체적인 목표로 하고, 국민들에게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쾌적한 생활여건을 마련해주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정에 반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거나 직접적인 오염피해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서 국민 개개인의 복지권을 수호한다.

- ① 환경오염의 원천을 막고 환경관련 법률을 정비함
 - 대기, 수질 등 환경기준을 복지국가 수준으로 강화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위해성을 배제한다.
 - 환경보전기본법을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관계되는 타 법률의 상위법으로 놓아 국가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한다.
 -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환경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수혜자부담원칙의 비용부담제를 적용하고, 환경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비용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하며 환경파괴자에 대한 벌칙을 종전의 벌금형에서 신체형으로 강화한다.
 -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신기술개발의 투자를 확충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환경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상수원, 음용수, 배출수, 대기질 및 기타 환경에 관한 의무측정항목을 재조정하여 국민의 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 ② 환경처의 기능강화 및 행정체계를 확립함.
 -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켜 환경보전을 위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각 부처의 환경보전투자 및 환경행정을 총괄조정토록 한다.
 - 환경영향에 대한 합리적 평가와 평가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수단을 강구한다.
 - 오염물질의 규제방식을 농도기준에서 농도, 배출량, 잔류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합총량규제로 전환시킨다.
 - 환경측정자료의 공개원칙을 확립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만족시킨다.
- ③ 수질환경과 대기환경의 개선
 - 맑은 물의 안정공급 및 보호를 위해 상수원에 폐수유입 차단, 폐수처리 시설의 확충 및 적정운영, 수자원의 공급확대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우량 지하수의 확보에 노력한다.
 - 주요 하천에 대해 수질자동측정망의 첨단화를 기하여 측정, 긴급경보체제 유지 등 종합적인 수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일률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상수보호구역에 주민보호 및 과학성에 근거하여 재조정하고, 환경보전시설 설치운영비의 부담을 오염자와 수혜자가 같이 부담토록 한다.
 -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오염측정방법의 개선, 청정연료사용 확대, 탈황시설의 무화, 에너지 절약형 및 이산화탄소 저배출형 산업으로의 육성 등으로 깨끗한 공기를 만든다.
- ④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폐기물처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예산확보 및 처리방법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제시한다.
 - 매립시설 등 처리시설 인근지역의 개발사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여 복지후생 시설도 병행 추진토록 하며, 해안 및 연안매립지와 무인도의 매립용 인공섬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 다량 배출자의 자가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폐기물 불법처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한다.

• 지역적인 이기주의로 매도당하는 납비현상을 국민의 정당한 복지권으로 인정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실시하여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⑤ 환경기술인력의 확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술인의 양성에 주력하도록 노력한다.

• 환경관련 부서의 인원확보는 공채를 통해서만 모집한다.

• 환경처는 전문인력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능사, 기사, 기술사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을 한다.

• 産·官연계체계를 확립하여 국가산업에 이바지하는 공복의 상을 확립하고, 산업계에서는 Brain·Pool 제도를 도입하여 산학관연의 유기적인 체계를 갖도록 한다.

⑥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교육의 강화

• 환경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환경에 대한 사회인식을 고취한다.

• 각종 마스크의 협조를 받아 소비절약, 쓰레기발생억제, 폐품교환, 분리수집, 재생품 우선 소비 등이 밀접히 연계되도록 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환경보호단체 및 주부단체 등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② 현장확인 위주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의 실상을 파헤치고 이의 개선 대책을 추구토록 한다.

③ 김찬우 의원(경북 청송·영덕지구), 문창모 의원(전국구)

④ 환경정책의 자문기구로써는 정책위원회 정책 4실(실장:유영)이 주도하고 실장 이하 2명의 정책위원이 전담하고 있으며, 지원 기구로는 정책연구팀, 정책연구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환경 관련 해외정보의 수집 및 신정책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⑤ 김동길 최고의원과 정책위 전문위원 1명이 UNCED 관련 국회의원 범지구 정상회의 참석

⑥ 환경처가 금년 4월 한달동안 전국 일원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188개소가 오염방지 시설의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 중에는 2년 동안 4회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도 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점검시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기업 등이 환경비용을 아직도 부담하는 것에 인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 형량과 배출부담금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보다 불법행위로 인한 상대적 이익이 크다는 현실 속에서 기업은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줄달음질 칠 것은 당연하다.

이제 환경규제 행정이 기업이 상식적으로 환경투자를 하였을 때 70% 이상의 기업체가 법을 쉽게 준수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규제를 통하여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로는 30% 이하의 기업체가 법을 준수할 수 있고 70% 이상의 위반자중 소수만 지적당하여 처벌을 받는다면 단속공무원의 비리조장만 일으킬 뿐 환경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⑦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환경보존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현장에서, 실험실에서, 교단에서, 공장에서 그 역할을 다하여 주시고 환경오염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솔선수범하여 자기자신이 먼저 지키며 다른 사람도 환경보전에 앞장서도록 적극 권유할 때 우리나라 더 나아가 지구환경을 우리의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지역적인 이기주의로 매도당하는 납비현상을 국민의 정당한 복지권으로 인정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실시하여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